

이영국.

✓ 011-211-4928

✓ 분당 새마을금회복지사무소 031-707-5005

인권정보자료실  
CPj1.4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참고자료

2003. 4.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목 차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주요일지
2. 교육부의 설명자료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개선 방안
4. NEIS관련 학부모여론조사보고서-(주)한길리서치연구소
5. 국회교육상임위원회 NEIS관련 회의록(요약)
6. 시민사회단체의 NEIS관련 의견서
7. NEIS관련 보도자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주요일지

2002 8월 교육부는 전자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9월에 전면 개통하기로 발표.

2002. 9.13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교무/학사 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영역도 포함)은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03년 3월로 시행을 유보.

2003 1. 17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33개 정책 공약 중 12번째 과제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면 재조정>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

### 2.6 시민·문화·학부모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공동성명 발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동조합, 교육학생연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시사만화 작가회의,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통신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 네트워크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하자센터 시민문화작업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인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상 가나다 순)

2.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것 대하여 교육부장관을 고발.

2.18 시민·문화·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와 NEIS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NEIS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2.19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음.

3.3 교육부는 CS자료를 NEIS로 이관하고 3.3일부터 NEIS를 시행  
3.3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일시: 3.3~3.2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3.17 학부모들의 NEIS 입력 동의 거부서 1차 분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하였음. (21,000명)

3.18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압도적 다수가 NEIS중단 요구  
※ 첨부된 국회교육상임위원회 회의록 참조

3.25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 장관 면담을 통해 NEIS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의 분리를 요구

3.26 'NEIS의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  
전국 18,200명의 학부모입력 동의 거부서를 2차로 교육부에 전달하였음.

3.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철폐를 위한 분회장 결의대회(연가투쟁)를 개최하였음.

4.2 교육부는 편파적인 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가지 항목을 조정 한 뒤 NEIS를 강행하기로 결정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행정정보화위원회에 불참하였으며 행정정보화위원회는 15인중 교육부 측 10인이 참여하는 반쪽짜리로 진행)

4.8 국가인권위원회 NEIS관련 청문회 개최

4.16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에 'NEIS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이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음.

4.17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1000인선언에서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음.

- 1) 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즉각 중단하고, NEIS로 이관된 자료는 폐기하라.
- 2) NEIS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삭제하라.
- 3)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라.
- 4)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4.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학사, 보건영역의 분리를 목표로 결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5월에 전개한다.'로 결정하였음.

#### 4.24 NEIS관련 학부모 여론조사 보고서 발표(한길리서치)

NEIS에 의한 학적정보 관리에 관해서도, 학부모들의 대부분(72.9%)은 생활기록부와 학생상담기록 등 정보를 NEIS로 관리하는데 반대하였으며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82.0%)은 NEIS에 의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관 동의거부서를 국가인권위원회(7층 상담센터)에 전달.

4.28 NEIS입력동의거부 학부모서명 3차분 10만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

※ 4.28일 현재 9만명의 교사가 NEIS의 인증을 폐기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학부모가 입력동의거부서명을 진행한 상태임.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부는 NEIS를 강행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이라는 홍보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정부의 자료가 견지해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NEIS의 실상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제작한 <설명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 1. 교육부 설명자료 검토-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 검토

**왜곡된 주장 1 :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최근까지 입력하지도 않는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 학교단위로 운영되었던 종전의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은 해커나 바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이스는 정보유출의 위험을 없애고자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두고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서 정보유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나아가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과거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자주민증제도”를 나이스와 동일한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되었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나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인인증제와 전자주민증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 1) 문제의 자료는 시사만화가가 그린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풍자와 과장을 기본으로 하는 시사 만화를 가지고 전교조의 주장을 왜곡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입니다.(전과기록, 신용상태는 물론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한 자료는 없습니다)
- 2) 학생신상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에 불과하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장하지만, 교무학사영역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축소했다고 하는 학생 신상 정보는 교무/학사 영역의 <학

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 도서>의 메뉴 중에서 **학적 메뉴에 해당하는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학생 신상 정보가 이렇게 축소된 것은 전교조와 시민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는 후에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그 외의 신상 정보도 입력 메뉴에서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입력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시킨 것일 뿐, 아직 NEIS에 학생 신상 입력 메뉴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입력 메뉴의 조정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기에 이러한 축소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 이외에 학적 메뉴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여부, 체육특기자여부, 보훈대상자여부, 소년소녀가장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본신상관리 도움말

학년도 2002 과정 [중간] 계별 [일반계] 학년 [1] 조회

학교 [공릉고등학교]

※ 1학년 공통과정 1년 [개인전환] [누가주소등록] [가족사항등록] [학력사항] [학년전(대학등록)] 계정

연도	이름	성명	성명	영문명	영문명
1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2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3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4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5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6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7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8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9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10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11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12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13	최정민	최정민	최정민	CHOONGMIN	최정민

<교육인적자원부 NEIS 지원서비스-사이버지원방-업무지원자료실>에 2003년 4일자로 등록된 “교무학사(고) 매뉴얼”에서 캡처한 것임  
 사이트 주소는 <http://helpsys.moe.go.kr/>

- 또한 학적 메뉴에는 <학생선도관리> 항목이

※ 선도학생등록 및 내역관리 도움말

학년도 2002 기간 [2002.01.01] - [2002.06.28] 정계구분 [정계도입생] 조회

연도	정계사유 일자	정계종류 일자	연명	학년	학과	반	번호	정계구분	정계사유	정계내역
2002	2002.06.27	2002.06.27	김지영	1	공통과정	1반	53	요선도학생	정계	영변대학교 출전시 카기
2002	2002.06.28	2002.06.28	이수영	2	인문사회과정	2	5	요선도학생	정계	연세대학교 출전시 카기

1/1 page

존재합니다. 이 곳에는 “정계구분, 정계사유, 정계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 교무/학사 메뉴는 학적 외에도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생활 등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곳의 정보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임을 교육인적자원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법정 장부로서 5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그 양식이 정해져 있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 졸업대장번호/학년/반/번호/담임성명/사진

1. 인적사항 : 학생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부모성명/생년월일/직업/특기사항
2. 학적사항 : 중학교 졸업날짜, 고등학교 입학날짜, 전입학 관련 자료, 특기 사항(졸업 후 진로 등)
3. 출결사항: 수업일수/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횟수를 질병, 사고, 기타에 따라 사유와 함께 기록
4. 신체발달사항 : 키/몸무게/체력급수/특기사항
5. 수상경력 : 교내외 구분하여 수상명/등급(위)/수상연월일/수여기관
6. 자격증 및 인증취득사항 : 명칭 또는 종류/번호 또는 내용/취득연월일/발급기관
7. 진로지도사항 : 특기 또는 흥미/학생, 학부모의 진로 희망/특기사항
8. 창의적재량활동 : 영역/시간/특기사항
9. 특별활동상황 : 특별활동 영역/시간/특기사항, 봉사활동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활동내용/시간/누계시간
10. 체험활동상황 : 일자 또는 기간/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내용/시간 또는 일수
11.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기별로 단위수/성취도/석차/제적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생 생활에 기록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특별활동 관리(자치/적응/계발/봉사/체험/학급/학교/행사 활동 등의 특별활동 누가기록)
- ② 창의적 재량활동
- ③ 생활지도 관리(생활지도기초조사, 생활지도카드출력,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 누가기록, 부적응자 관리, 진로지도상황)



- ④ 자격증/인증 관리
- ⑤ 상훈 관리
- ⑥ 장학생 관리
- ⑦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 ⑧ 학습 지도 관리

- ③번 생활 지도 관리 메뉴에서는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생활지도카드에 기록되는 내용은 부모가 양친인지, 편부모인지와 종교, 교우 관계, 생활 환경 등입니다. 예전의 환경조사서와 유사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선도 여부/요선도요인/사회시설



수용여부/사회시설명/결연교사/학생특기사항을 기록합니다.

- 또한 생활 지도 관리 메뉴는 담임 및 일반 상담을 누가 기록하게 된다.

3)보건영역-NEIS에는 보건 영역이 27개 영역 중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 영역은 <기초자료관리,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관리, 보건통계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건 메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개인별 건강기록 누가 관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EIS의 보건 메뉴 중 건강기록관리와 학교보건관리 부분은 학생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학교에서 언제 무슨 질병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의 기록을 누가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 신체 검사, 질병 치료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꺼려지는 소중한 개인 정보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건강 상태와 신체 검사는 건강기록부에, 질병 치료는 보건 일지에 기록되어 보건 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본인에게 교부되며, 이후에는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EIS에 의해 이러한 모든 자료가 웹을 통해 누적된다면,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쉽게 가공, 조작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기록부도 NEIS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적사항 :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혈액형/보호자성명/학년/반/번호/담임성명

- ② 전염병 예방접종 : 취학전 예방접종(결핵,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일본뇌염 접종 여부)/취학후 예방접종(접종명, 접종일자)
- ③ 체격 및 체질 검사 : 체격(키, 몸무게, 가슴둘레, 앞은키, 비만도)/체질(시력, 색각, 눈병 여부, 청력, 귓병 여부, 콧병, 목병, 피부병, 영양상태, 척추형태, 가슴통, 기관능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성질환)/검진일자, 검진 의사 성명, 종합소견
- ④ 구강 및 병리검사 : 구강검사(치료할 치아, 빠진 치아, 치주질환, 부정교합, 기타질환, 검진 의사 성명, 검사일자)/병리검사(소변검사, 결핵검사, 간염검사)/
- ⑤ 체력 검사 : 50M 달리기/팔굽혀펴기, 매달리기/윗몸일으키기/멀리뛰기/앞으로굽히기/오래달리기/총득점/체력급수
- ⑥ 병력 기록 : 학교, 학년/이환 기간/병명/치료 현황
- ⑦ 건강관리 가정통신

4. 종전 학교정보시스템(C/S 시스템)이 갖고 있던 문제의 근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들에게 중소기업 이상의 컴퓨터 관리 업무를 강요했던 주체가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S/A, C/S, 그리고 NEIS까지 학교 현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정보화라는 명분으로 전산화를 밀어붙였습니다.

- 현재의 기술로는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지만, 한번도 보안 기술이 해킹 기술을 앞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곡된 주장 2 : 학생, 학부모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교육부가 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교육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므로 적법할 뿐 아니라 국가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02.12.5]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이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 (신체검사) 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81.2.28]

- 1) 교육기본법의 조항은 일반적인 교육의 정보화에 대한 언급일 뿐입니다. 게다가 근거 조항이랄 수 있는 제23조의2는 2002년 12월 5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본래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NEIS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신상 정보 축소 조치마저도 2003년 2월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 2)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고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건강기록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록부 또한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의 주체입니다. 사실, 건강기록부가 아니라,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왜곡된 주장 3 :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교육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 없이는 교육정보를 타기관에서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1조 (설치 및 관리운영기관)

- ① 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센타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타를 설치한다.
- ② 행정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센타 및 각 지역센타에 장을 두되, 총괄센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각 지역센타의 장은 각 시·도교육감이 된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괄센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제12조 (적용 기관 및 시기 조정등)**

- ①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기관 및 각 센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적용 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되, 각 센타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구축 정도등에 따라 적용시기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지역내에 위치한 적용 기관이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공동활용)**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행정기관간 공동활용하고,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기관간 제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공동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통보)**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

양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9>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삭제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년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9>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

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루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삭제<1999.1.29>
  -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1999.1.29>

**왜곡된 주장 4 : 교사통제, 학교통제, 노동통제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NEIS는 자료의 입력·수정 권한이 있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원천적으로 원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제2차적 자료인 통계 업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1) 전국에는 1만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 주체가 다릅니다. 도시와 농촌의 학교는 또한 규모와 시설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라 해도 과학고·외국어고·인문계고·실업계고·종합고·체육고·예술고 등으로 교육 목적이 다릅니다.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 대안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 2) NEIS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형태의 교육 행정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요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이러한 표준화는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 행정이 획일적으로 바뀌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 3)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접속과 시스템 로그 기록에 의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양적으로 기록·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며 지나친 염려라고 하기에 앞서 국가가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앞장서 물적 토대를 구축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입니다. 총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관리하기에 사고가 없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 4) 교사에게 자료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해당학교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해당 학교 최고관리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현재의 권한 부여 시스템은 교육부를 정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한을 부여하기에 따라 누구라도 직접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DB가 교육청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DB 서버에 루트 권한으로 접근하여 백업 등의 관리를 하면서, 자료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곡된 주장 5 : 교원의 업무가 더 많아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업무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정보화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정보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나이스는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에, 나이스가 정착되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따라서, 교사가 행정자료 입력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다만, 나이스의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교원의 업무가 크게 줄어듭니다.

1.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컴퓨터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상이 문제입니다.



2. 정보화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정보화에 대한 지나친 맹신일뿐입니다.
3. 학생 상담을 하면서 수첩에 적는 교사의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컴퓨터에 쳐 넣는 NEIS의 모습이 자연스럽습니까? 수첩을 들고 운동장 한켠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NEIS가 시행되면, 모든 상담은 컴퓨터 앞에서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 후 수첩의 내용을 NEIS에 다시 입력하는 공연한 잡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학생 이해를 위해 환경조사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보며 학생을 이해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합니다. NEIS는 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묶어두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찾아서 이리 저리 클릭을 해야합니까? 그냥 서랍 속에서 환경조사서를 꺼내고 교무수첩을 펴면 됩니다.

**왜곡된 주장 6 : 학생, 학부모 신상정보가 졸업 후 50년 동안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는 국민들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제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되므로, 50년 동안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정보가 떠다닌다는 주장은 왜곡·과장된 것입니다.

- 1) 재학, 졸업,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NEIS에 집적·집중되는 정보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NEIS를 통한 민원서비스도 ① 온라인으로 신청 ②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③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에 들러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 민원신청인은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 서류를 수령 방법은 우편 혹은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입니다. 안방에서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방식이라면, 온라인 신청 외에 NEIS의 장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신분확인절차는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신분을 확인한 곳(동사무소도 가능할 것입니다.)에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고, 그에 따라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면 민원인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민원서비스의 불편함은 해소 가능합니다. NEIS를 해야만 이러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주장 7 : 전국 800만 학생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걸맞게 16개 시·도교육청별로 DB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00만 전 학생의 신상정보가 중앙정부의 DB에 구축·운영되어 인터넷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1조 (설치 및 관리운영기관)**

- ① 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센타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타를 설치한다.
- ② 행정시스템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센타 및 각 지역센타에 장을 두되, 총괄센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각 지역센타의 장은 각 시·도교육감이 된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괄센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 1) 교육인적자원부 한 곳인가, 시·도교육청별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왜 학생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게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총괄센타가 운영됩니다.
- 3) 다섯곳에 백업 센타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추진중입니다. 결국 DB는 중앙 집중으로 관리되는 것과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 2. 교육부 설명자료 검토-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검토

**일방적 주장 1 :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안방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당연한 배려입니다.
- 나아가, 나이스는 정보의 공개와 제공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높이는 “열린 정부”의 이념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학교 및 학생관련 정보를 교육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연간/월간 학사 일정은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내용은 학년 단위로 1년에 1회 기록합니다. 연말에 1회 기록되는 정보로 학부모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과연 무엇입니까?

3) 학생의 성적표는 시험 종료 후 배부되고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의 자녀)의 충치수나 몸무게를 알기위해 학부모님들이 꼭 NEIS에 인증을 받아서 접속해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 할 수 있습니다.

5) 학부모가 알고 싶은 정보는 대면 상담을 통해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정보도 있습니다.

6) 진정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도리어 학교의 행정 정보(즉 행정실/서무실에서 이루어지는)와 국가의 행정 정보입니다. NEIS에서 이러한 행정 정보는 도리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 정부의 취지는 행정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NEIS 전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27개 전체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 게다가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

NEIS의 27개 시스템 업무 영역(\* 2003년 3월 개통 예정)

단위업무	세 부 내 용
기획	주요업무, 기관평가
공보	보도자료 관리
법무	법률정보, 판례정보, 법령질의해석
감사	감사계획 및 결과, 감사현황 분석, 감사자료 공유, 사이버 감사
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및 내역관리, 재산신고
교육통계	학교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시설현황, 주요업무통계 등
•입(진)학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등
장학	교육과정, 연구학교, 장학정보, 학생행사관리, 연구대회 등
•교무/학사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교과용도서
검정고시	원서접수, 성적처리, 고사장 관리, 합격처리 및 각종 통계산출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관리,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보건	학교보건실 관리, 학교환경관리, 건강기록부 및 보건 통계
•체육	학교체육시설관리, 운동부 및 선수관리, 각종현황 및 통계관리
교원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전보,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기간제교사, 전문직 임용, 자격검정관리
일반직인사	정·현원, 임용시험, 인사기록, 임용발령, 호봉, 평정, 승진, 연수, 상훈 및 징계, 복무
금융	월급여, 연봉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연말정산, 기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민원	제증명, 유기한 민원,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현황통계 등
비상계획	민방위 편성, 민방위 해제, 민방위 교육훈련, 공익근무요원 편성, 공익근무요원 관리
법인	법인정보, 예·결산, 법인 대장
시설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승인, 학교시설사용승인, 시설유지관리, 시설현황, 수용계획
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대장관리, 사용허가/대부관리, 폐교재산활용관리
물품/•교구/•기자재	취득/운용관리, 재물조사, 수급계획, 교구기준안 관리, 교구현황관리, 실험실습재료관리, 기자재 기준안관리, 기자재 현황관리, 기자재 통계
예산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이월, 예산운용, 예산통계
회계	세입, 세출, 세입세출의 현금, 계약/입류, 결산, 자금
학교회계	예산, 세입, 세출,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 세무관리, 발전기금
급식	학교급식통계, 급식관리, 급식의 관리, 급식분석
시스템	코드관리, 시스템연계, 보안,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로그관리, 인터페이스관리, 배치작업관리, 업무처리승인관리

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함에도 NEIS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체를 그대로 전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국민편의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 (행정정보공개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일방적 주장 2 :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학사 영역만 종전의 폐쇄적 시스템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 종전에 학교단위로 운영되던 정보시스템은 보안에 취약하고 전문 보안관리자가 없어, 해커와 바이러스 침투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시스템으로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귀중한 개인 신상 자료 유출 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습니다.
- 아울러, 종전의 시스템에 나이스 정도의 보안체제를 구축할 경우 5년 간 운영비가 최소 7,600억원, 최대 2조 4,000억 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채택이 불가능한 대안입니다.
- 나아가, 더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현시점에서 교무/학사업무를 종전 시스템으로 돌아갈 경우, 2003년도 6월부터 시행될 2004학년도 수시모집전형 및 정시모집전형 등 대학입시업무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여 입시전형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나,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종전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C/S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러한 시스템을 아무런 준비없이 밀어 넣은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2. 5년 간 운영비가 최소 7,600억원, 최대 2조 4,000억 원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연봉 3000만원의 인력을 1만개 학교에 5년간 ( $30,000,000 * 10,000 * 5 = 1,500,000,000,000$  1조 5천억) 배치한다는 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단위 학교 시스템 관리를 위해 기존에 투입되던 예산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관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3. 입시전형에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미 작년, 재작년 입시를 치루어 냈습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필요한 자료는 ① 2학년때까지의 성적 ② 수시 원서 접수 시점까지의 출결 기록 및 수상 경력입니다. 2학년 때 까지의 자료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출결과 수상 기록만 추가하면 수시 전형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결국 NEIS에서 교무/학사 영역을 분리하여도 수시와 정시 전형에 아무리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주장이야말로 사실 왜곡과 공연한 헐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 주장 3 : 학생, 학부모 정보의 입력을 무조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에는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합니다.
- 국가가 국민에게 더욱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 1) 모든 개인 신상 정보는 사생활 보호 대상입니다. 법률의 규정 혹은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 신상 정보 수집이 인권 침해임을 모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지가 NEIS와 같은 괴물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노력과 정보화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NEIS는 어떤 목적하에 학생이 출결, 가족사항, 성적, 상담기록, 건강기록 등을 수집·관리하려는 것입니까?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따위의 민원 서비스를 위해 이 거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지이거나 사기입니다.

### 3. 나이스가 가져다 주는 교육적·국민 복지적 효과

선생님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더 많은 시간을 교육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입학 후 2~3개월씩 걸리던 신입생 학적 구성과 학생건강기록부 작성은 단 몇 시간 내에 해결됩니다. 전·출입을 위해 더 이상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필요도, 디스켓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몇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으로 해결됩니다.
- 이 뿐 아닙니다. 각종 통계자료 보고는 온라인 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서를 수없이 작성하지 않아도, 교감·교장선생님의 결재를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 대한민국 어느 학교도 신입생 학적 구성에 2~3개월씩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전학을 오고 가면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전출생의 정보를 담은 디스켓을 우편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만들어진 각종 서류들은 여전히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2) 통계가 필요하다면, 오로지 교육 통계 작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통계를 작성하는데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상담기록 등이 왜 필요한지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학부모, 이제 더 이상 자녀 교육의 방관자도, 선생님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자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모르는 학부모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에 대한 개별지도를 못해 주시는 선생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 3, 40명을 책임지는 담임선생님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셋별이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잘 분석하면 지도에 큰 보탬이 될 텐데, 마음 뿐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 담임 교사가 셋별이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별이에 대한 정보가 종이로 쓰여져 있어도, 단위 학교 시스템에 있어도, 혹은 NEIS에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처럼 정보가 NEIS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2. 학기초 셋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는 생활기록부에도 건강기록부에도 없습니다. 그 정보는 교사의 머리 속에, 그리고 교무 수첩에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학년말에 종합적인 평가와 정보가 수합되는 곳입니다. 학년말이 되기 전에 생활기록부는 빈 종이일뿐입니다.

일반국민의 학교관련 민원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으로써 국민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 취업을 위해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에 들러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지 않은 수의 민원인들이 취업을 위해, 또는 검정고시를 위해 각종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는 일일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나이스는 일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이스를 통한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우리 모두가 밝은 사회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1) 여전히 민원인들은 일일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찾아가야 합니다. 단지 졸업한 그 학교를 찾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은 민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NEIS로 발급되고 있습니까? 대학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원의 필요성이 대학보다 적은 초·중·고등학교에 NEIS여야만 민원 처리 혁신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개선 방안

교육부는 4.2일 행정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NEIS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입력항목을 조정한 교육부의 NEIS 개선방안은 인권침해, 교원통제, 교원업무 증가 등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간직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영역, 입학/진학의 3개 영역에 한해서는 각 학교에 이미 구축된 CS(또는SA)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4개영역에 대해서는 NEIS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1.NEIS의 근본적 개선방안

가.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항목은 NEIS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정보를 저장한다.

교육부는 2001년 까지 1,470억원을 투자하여 각 급 학교에 CS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S시스템은 각 학교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이다. 이는 학생 정보가 교육적으로만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명확화의 원칙과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가 학교단위에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다. NEIS의 자료 권한 부여 방식에 의한 기술적 분리로는 개인의 정보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학교생활정보는 자료 저장 서버가 단위학교에 위치하여야 하고 인터넷과 NEIS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나. NEIS에서 교무/학사 3개 영역을 분리하고 각급학교는 지금처럼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 또는 S/A)을 이용하여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1) NEIS로 자료를 이관하였어도 이관된 NEIS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까지 학교에서 사용하던 C/S 또는 S/A를 사용할 수 있다.

(2) C/S나 S/A에서 졸업과 진급 처리를 하고 새학기 업무 분장과 학급 편성을 하면 아무 지장없이 교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C/S나 S/A는 최소 3년 이상 실행된 프로그램이므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고 교사들의 추가 교육이 필요 없다.

(4) C/S서버관리, 생활기록부 관리, 전출입, 학적 등 오프라인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업무분장을 추진한다. (C/S 운용시 교육정보부 담당자 1인에게 대부분의 C/S 서버 관리에서 생활기록부 업무까지 떠넘겨 업무 편중을 유발했었다.)

#### 다. NEIS로 운영된 시범학교도 교무/학사, 보건영역은 C/S로 전환한다.

16개 교육부 시범학교와 220여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에서는 작년부터 NEIS로 생기부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C/S와 NEIS를 병행하여 데이터를 작성하여 C/S로 돌아오는데 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들 학교중에서 교육부 시범학교나 신설학교, C/S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는 NEIS에만 생기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서 C/S 서버를 신규로 구축하는 문제가 있다.

(1) NEIS에서 C/S로 자료를 내려받는 메뉴가 있어서 개인 데이터를 C/S 자료로 전환할 수 있다.

(2) NEIS자료를 C/S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C/S 서버 구축과 자료 이관 작업을 완료하여 해당 학교에 설치해야 한다. C/S서버 유지보수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 저비용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3) NEIS에서 교무/학사가 제외되면 NEIS에서 주장한 대국민서비스가 조정되어야 한다.

(4) 학생 생활기록이나 성적 등 중요 정보는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가운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말하는 대국민서비스는 교육의 3주체를 분리시키려는 기도에 불과하다.

(5)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민원서류는 학교 웹서버에 신청 메뉴를 신설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 2. C/S 서버와 학교 전산망 관리 문제

### 가. 학교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지원체계를 갖춘다.

학교전산망과 컴퓨터 관리는 교사가 아닌 IT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IT 인력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력관리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1) 현재 학교 서버와 전산망 보수유지 용역은 목적 경비 소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상주하면서 정보기기를 관리할 담당자와 조직을 신설한다.

(2) 현재 학교 전산망, 방화벽서버, C/S 서버 보수유지비용을 적절히 통합하여 활용하면 지원체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3) C/S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담당자 핸드북을 제작한다.

이제 까지 C/S 서버를 사용하면서 일선 교사들이 개발한 효율적 관리 방법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자료를 수집하여 C/S 시스템 활용을 위한 핸드북을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면 전교조 NEIS 대책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시도교육청 단위로 C/S 서버와 교무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다.

(1) 시도교육청별로 교무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부서를 신설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C/S 업무 담당 교사를 파견하여 관내 학교를 지원한다.

(2) 규모가 작은 시도는 초·중·고 급별로 1명씩 3명의 지원교사만으로 질의 응답과 넷미팅으로 충분히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3) 전국단위 운영 지원팀으로는 C/S 운영에 전문적 소양이 있는 교사 3인 정도를 파견하여 전문가 그룹 지원팀을 운용한다.

(4) DB와 운영체제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IT 전문가를 전국단위 지원팀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다. 학교 서버 보안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 학교전산망 운영지원팀이 신설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C/S 서버 관리와 보안을 담당할 용역 체계를 확립한다.

(2) 방화벽 서버가 구축되지 않은 학교는 C/S 서버에 sysop과 교사들이 접속할 수 있는 IP를 제한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3.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 신설 방안

지금의 NEIS 도입에 따른 혼란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가.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정보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기구로 한다.

- (1) 교육정보화 필수 프로세서 규정을 규정한다.
- (2) 정보관리 감시와 유출 방지
- (3)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나.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표, 자로 구성한다.

- (1)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중에서 각각 위원 정수의 절반씩 심의위원을 추천한다.

## NEIS 관련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3.18 14:00~ 18:00
2. 장소 국회교육상임위원회

3.18(화) 14:00에 국회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개방, NEIS에 대해 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키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NEIS와 관련 하여 7명의 국회의원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NEIS의 중단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미경의원

지난 국감에서 NEIS에 대해 ‘법률자문’ 과 ‘평가단’ 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하지않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NEIS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1)건강기록부를 NEIS에서 삭제하고 2)생활기록부 중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하고 3)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재산, 정당등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운영위원회 이전에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입력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 권철현의원

NEIS의 입력사항은 교무수첩에 있어야 할 내용이며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NEIS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CS에서 NEIS로 변경과정에 대한 청와대 자료를 제출하라.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의혹을 해소하기위하여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최연희의원

국어연구원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면 NEIS는 네이스라고 읽어야지 교육부가 나이스라고 하면 안된다. 정보통신부의 해킹등의 보고에 따르면 컴퓨터보안망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기록부와 생활기록부의 정보 특히 학생의 성장과정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또한 교원이 교재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간에 출석입력에 매달리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다.

### 김정숙의원

NEIS도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NEIS도입관련자료를 제출하라. NEIS전

면철회, 전면 폐기는 불가능하므로 NEIS를 보완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 설훈의원

NEIS는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하며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NEIS는 밀어붙힐 사안이 아니다.

#### 이재오의원

CS에서 NEIS로 변경과정에서 당시 교육부가 1)교육철학, 교육현장의 조건과 불일치 2)해킹우려 3)정보통신보안지침에 위배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된 의혹이 있다. 학부모서비스정도를 NEIS도입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장이 있느냐? “NEIS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위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관답변)법률에 위배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윤경식의원

NEIS는 행정시스템을 교육에 접목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교원들이 행정입력에 집중하느라 교사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교원을 동사무소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NEIS는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NEIS관련 질의

1.일시: 4.10

2.장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부, NEIS 발주기준 변경 조달청에 요청”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보화의 방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재구축으로 변경한뒤 NEIS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주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영세 의원은 10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이 공공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 조달기관인 조달청을 수시로 방문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기술 90%, 가격 10%'의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사업 발주 때 적용하는 '기술 70%, 가격 30%'의 기준을 무시하고 절

충 끝에 '기술 80%, 가격 20%라는 특정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1년 2월 교육부 담당자들은 기존 C/S기반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는데, 같은해 4~7월 느닷없이 교육부 담당이 경질되고 NEIS로 변경됐다"면서 "실무담당 국장과 담당관이 청와대에 불려가 정책기획수석실과 전자정부특위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NEIS는 성적과 진로지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담겨 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누적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 2003년 4월11일 오전 4:19)

## <참여연대>의 NEIS 관련 의견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NEIS의 인권침해요소를 해결할 의지 없이 무작정 시행부터 하고 보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행정편의주의만을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수준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하여 인권이라는 대명제를 근거로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NEIS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 1. 현행 NEIS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나아가 대다수 국민의 기본적 인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것은 행정편의 또는 기업이윤 추구라는 목적의 뒷전으로 밀리면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NEIS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NEIS로 이관되는 개인정보는 81년 졸업자 이상의 개인정보이므로 실제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해당된다-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권 의식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률」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수집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수집·보관·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행정서비스라는 명목하에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도 모두 포괄하여 수집하며, 다른 행정기관과 공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무/학사/보건 분야의 개인정보는 교육부에서 수집·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를 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현행 법률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보화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수집의 기본적 원칙까지도 무시하면서 NEIS를 강행하는 것은 소위 정보인권이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인권요소를 국가기관이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따라서 NEIS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NEIS 시행을 유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이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삭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NEIS를 프라이버시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학생,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가 참여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2. 교육부는 교육주체들의 참여 및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NEIS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및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NEIS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가장 큰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학생대표들을 배제하는 등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쪽짜리 회의를 강행하고 마치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위원회는 결국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NEIS 시행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위원회 결정을 NEIS 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보여준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과정은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처리하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이 배제된 행정정보전산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항상적으로 유출될 위험을 안게 되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개인적인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참여연대는 현행 NEIS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합니다.<끝>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11일부터 NEIS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반인권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 NEIS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NEIS의 시행에 대해,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20만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정보입력 동의거부서에 서명을 하는 등 정보주체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NEIS 시행을 찬성하는 진영을 다수로 한 편파적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문제제기하며 참석을 거부한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위원회를 졸속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겨우 두 차례의 회의 끝에 NEIS 입력 정보항목들을 '일부' 삭제하는 것에 합의하고, NEIS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합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다입력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며 왜곡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기록카드 영역의 많은 개인정보항목들이 온존하고 있으며, 적어도 위 4가지 영역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NEIS의 본질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사상·양심에 상관없이 그들의 정보를 조작·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사회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가공·생성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NEIS를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가공·활용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부르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인권의 박탈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훌륭한' 국민통제 기제로 악용될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막대한 정보가 집중될 NEIS를 학부모를 위한 민원서비스나 대입전형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말을 끝이끝대로 믿는다면, 통제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집중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시스템 보안의 위험성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안시스템이 해킹이나 내부유출에 의해 붕괴되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상황은 교육부의 NEIS 정책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교육부는 NEIS의 보안시스템이 "최상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그 어떤 보안기술도 해킹이나 내부유출을 완벽하게 억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적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는 NEIS 찬반 진영의 첨예한 입장대립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본질은 행정편의와 인권보호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가에 있습니다. 또한 이 대결은 정보통제를 통해 절대권력을 꿈꾸는 국가와 민주사회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개인들의 대결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절한 타협안으로 두 진영의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며, 보편적 인권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인권위의 본분에 더욱 철저히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수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개인정보가 NEIS로 이관·입력되면서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NEIS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루 빨리 결정·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 시행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판단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해야 합니다. 교무/학사·보건·입/진학·교원인사기록카드 영역 전체가 NEIS 입력메뉴에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 NEIS는 결코 시행되어서 안 됩니다.

▷ 만일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한 검토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NEIS 시행을 일단 중지하라는 긴급조치를 교육부에 권고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인권연대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NEIS 관련 의견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면적 강행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는 교원·시민사회단체들 간에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NEIS에 반대하는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실제 많은 수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찬·반 양측 모두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예하게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NEIS와 같은 전국단위 시스템으로 국민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번 NEIS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정보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1. NEIS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 항목들과 장점들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NEIS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대해 우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를 하는데 있어 NEIS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와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분하고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NEIS의 모든 영역에 대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영역인 교무/학사/보건 3개 영역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인권침해 요소가 명백한 것입니다. 이들 영역은 교육부가 뒤늦게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3개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교무/학사/보건 영역의 인권침해 항목(발체)>

교무/학사	학 적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여부, 체육특기자여부, 보훈대상자여부, 소년소녀가장여부, 학생선도관리(징계구분, 징계사유, 징계내역)
	학교생활 기록부	출결사항(수업일수/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횟수를 질병, 사고, 기타 에 따라 사유와 함께 기록), 교과학습발달상황(단위수/성취도/석차/재적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학생생활	생활지도 관리 (생활지도기초조사, 담임상담 누가기록, 일반상담누가기록, 부적응자관리, 진로지도상황)
보 건		체질(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성질환) 병력기록(학교, 학년, 이환 기간, 병명, 치료현황)

성적, 출결사항, 학생생활 등의 정보는 학생 개개인의 과거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여부,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학적에 기록되는 많은 사항들은 본인이 매우 밝히기를 꺼리는 내밀한 정보입니다. 체질, 병력 기록 등의 정보는 유출시 취업 등에 있어 치명적 손해를 안겨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담당 교사에게는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문제가 있는 많은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삭제했다고 하는 항목들은 단지 필수 항목에서 제외된 것일 뿐 그 필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입력 항목이 남아있다면 그 언제든지 채워질 위험이 있고, 그렇게 양식화, 표준화된 NEIS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들에 대해 전면 재 논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청문회 자료집에서 “3월 28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교육 행정정보화위원회’를 발족하여 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NEIS 시행 기본원칙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에 의해 NEIS에 찬성하는 측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구성되었고, NEIS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반쪽 위원회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면 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양측의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중립적 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15명) 중 NEIS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측은 5명에 불과
- 교육부는 1차 회의 2-3일 전에 공문을 발송해 위원회 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
- 시민 사회단체들이 회의 일정과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기를 요청
  - 회의 일정이 촉박함
  - 교육주체(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이어야 하는데
  - 교육부는 직접 당사자인 학생을 배제
-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부는 2회에 걸쳐 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결정
-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진행한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에 대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임

4.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전자 정부 문제의 출발점임을 감안하여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수집, 이전, 관리, 보존연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NEIS는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NEIS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은 향후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데이터를 수집, 이전, 관리, 보존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NEIS 상 민원서비스 제공기간을 초·중등학교는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에 국한해서 개인정보를 보유/제공하겠다고 연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부는 졸업생들의 자료를 연한이 지나면 단지 민원서비스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 이들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 백업 데이터를 만들어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국한하여 적정한 만큼 수집되고 적정한 기간동안만 보존되어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위에서 모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5. NEIS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3개 영역에 대한 시행 중단을 권고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4월 11일 공식적으로 NEIS의 전면 시행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시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NEIS의 핵심 3개 영역에 대한 시행 중단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끝>



교육부, NEIS에서 CS로 돌아서나  
전교조-교육부, CS 재가동

교육부가 NEIS 강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 실무협에서 기존의 학교별 행정정보시스템 (아래 CS) 재가동 문제가 쟁점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실무협의 테이블은 지난 달 30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교육부 차관의 협상에서 'CS 복귀 시 대학수시모집과 예산소요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마련되었다.

3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정보담당자들은 CS 재가동과 대학수시모집 및 소요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 우선 수시모집과 관련해 교육부는 CS 재가동 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최대 2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이야 어찌됐든 CS로도 수시모집전형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CS 보안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한 학교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향후 5년간 2조4천억이 든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모든 CS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시도교육청 별로 2명을 배치하는 안으로 9백 억이 소요된다고 맞섰다.

이날 실무협회는 비록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CS 재가동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NEIS <sup>문제</sup>대세론이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진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적어도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NEIS 중단과 CS 재가동이 재정적·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육부의 이러한 협의의 향방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권고 결정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CS 재가동에 관한 의견서를 오는 9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해 이후 교육부의 행보가 주목된다.